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7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로 상담카페 운영,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등을 통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위기 십대여성들의 조기발견, 일시보호, 긴급생활지원 등을 통해 초기개입하여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도록 운영 중인 시설임

나.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초기개입 및 일시쉼터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2-1 2,3층
- 시설규모 : 상담카페 및 주간보호 공간 120㎡
- 주요시설
 - 상담카페 및 주간보호 공간 : 카페, 침실, 주방, 욕실, 화장실 등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379백만원('24년 기준)
- 위탁사무
 -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 및 상담카페 운영
 - 일시보호, 숙식제공, 세탁·샤워 등 일시생활지원 및 상담
 - 청소년 밀집지역 현장상담 및 온라인 상담, 지원기관 정보 제공,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조체계 구축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등의 복합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십대여성이 낙인감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카페 및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를 운영하여 위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시설로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노하우가 필요함
-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위기 십대여성의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초기개입 및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연계하고 해당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최주윤 (☎2133-5048)